

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1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19. 2.

제 출 자 : 강동구청장

1. 제안이유

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확대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·공헌하신 국가유공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로금지급 금액 일부내용 변경 (안 제9조제1항)

-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⇒ 예산의 범위에서 50만원 이내 위로금 지급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국가보훈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: 2019회계연도 예산편성 반영

다. 기타

- 1) 전문 및 신·구조문대비표: 별첨
- 2) 입법예고(2018. 11. 28. ~ 2018. 12. 18.)결과: 의견없음
- 3) 규제심사: 원안동의
- 4)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동의
- 5)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: 원안동의
- 6) 아동영양평가 결과: 원안동의

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사망위로금 30만원”을 “예산의 범위에서 50만원 이내의 위로금”으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망위로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)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보훈대상자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사망위로금 지급 및 신청 등)</p> <p>① 구청장은 제5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<u>사망 위로금 30만원</u>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제9조(사망위로금 지급 및 신청 등)</p> <p>① ----- ----- <u>예산의 범위</u>에서 <u>50만원이내의 위로금</u>-----.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○ 해당 없음

○ 예산증감 세부내역

(단위: 천원)

구 분		현행(2018)	개정 후(2019)	비고
세입	○			
	소계(a)			0
세출	○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	35,000	64,000	구비
	소계(b)	35,000	64,000	구비
□ 총 비용(a-b)				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8조제2항제1호 에
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연도별 사망위로금 지급액이 소액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
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를 생략함

○ 연도별 사망위로금 지급 현황

구분	2016년	2017년	2018년	비고
금액/인원	10,500천원/70명	13,500천원/94명	32,000천원/110명	

4. 작성자

복지정책과장 유 희 수(☎02-3425-7132)